

kiri Weekly

2013.2.12 제220호

이슈

호주의 퇴직연금 세제개혁과 시사점

포커스

대체투자수단으로서 대재해채권(Cat Bond)

금융보험 해설

금융상품의 이해 (16): 부채담보부증권(CDO) (1)

글로벌 이슈

미국 장기금리 상승과 시사점

국내 생명보험산업의 경쟁심화 가능성

금융시장 주요지표

kiri 보험연구원
Korea Insurance Research Institute

이슈와 포커스는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보험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5-4 8층 보험연구원 (문의 : 김세환 부장 / 02-3775-9051)



호주의 퇴직연금 세제개혁과 시사점

류건식 선임연구위원, 이상우 수석연구위원

요약

- 우리나라의 퇴직연금 가입률(2012년 9월 기준)은 전체 사업장의 12.2%에 불과하고 GDP 대비 퇴직연금자산의 비중도 3.8%에 그치고 있어 퇴직연금으로의 전환이 미흡한 실정임.
 - 퇴직연금 활성화 미흡은 퇴직연금 가입을 적극 유도하기 위한 연금세제 혜택의 부재 등을 들 수 있음.
- 반면에 호주는 과감한 퇴직연금세제 혜택을 통해 가입률이 95%를 상회하는 등 퇴직연금제도가 대표적인 소득보장제도로 자리매김하고 있음.
 - 공적연금의 보장수준이 낮은 상태에서 근로자의 퇴직연금가입률 제고를 위해 강제가입 시행과 더불어 과감한 퇴직연금 세제 혜택이 이루어짐.
 - 퇴직연금 기여금에는 15% 최저세율(일시금 기여금은 48% 최고세율)을 적용하여 퇴직연금가입을 적극 유도하는 한편, 50세 이상 고연령 근로자에게는 10만 호주달러(50세 이하 근로자는 5만 호주달러)까지 세제혜택을 부여함.
 - 또한 60세 이상 퇴직급여 수급자는 일시금 또는 연금 수급유형을 불문하고 비과세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연금재원이 소진하는 것을 방지하고 2012년부터 저소득계층에게는 불입금의 15%를 보조금으로 지원하여 저소득계층의 퇴직연금가입을 적극 유도함.
- 우리나라도 퇴직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연금세제 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연금세제의 혜택을 단순한 세수감소 문제로 보지 않고 퇴직연금 활성화에 따른 정부의 고령화 리스크(재정부담) 경감이라는 차원에서 전향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함.
 - 현행 일시금에 대한 세제혜택은 축소하되, 연금에 대한 세제혜택을 상향조정하여 연금으로의 전환을 적극 유도할 필요가 있음.
 - 소득이 일정수준 미달하는 근로자가 퇴직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호주식의 퇴직연금 매칭기여(Matching Contribution)를 전향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 연령 및 소득별에 따른 연금세제의 차별화를 통해 취약계층에 더 많은 연금세제 혜택이 돌아가도록 연금세제의 개편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1. 검토배경



- 우리나라의 퇴직연금제도는 최근 적립금이 56조 원을 상회하는 등 외형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으나 영세사업장의 가입률이 극히 저조하는 등 퇴직연금으로의 전환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실정임.
 - 2012년 9월 말 기준 퇴직연금 사업자 가입률은 전체 사업장의 12.2%에 불과하고 GDP 대비 퇴직연금자산의 비중도 3.8%에 그치고 있음.
 - 500인 이상 사업장의 퇴직연금 가입률이 79.7%인데 반해 10인 미만의 사업장 가입률은 8.7%임.
- 이처럼 퇴직연금제도의 정착이 미흡한 주된 이유로는 퇴직급여제도의 이원화(법정퇴직금, 퇴직연금), 지급보장장치 부재, 그리고 퇴직연금세제(이하 '연금세제'라 함) 혜택 미흡 등을 들 수 있음.
 - 연금세제는 퇴직연금으로 전환을 위한 실질적인 유인책이라는 점에서 최근 연금세제 개선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시점임.
 - 연금세제 관련 이슈로는 현행 소득공제 혜택수준이 낮아 연금가입을 유도할 만한 유인책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소득공제 수준을 대폭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 퇴직일시금의 세제혜택을 과감히 축소하여 연금전환을 적극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점, 저소득계층에게 보다 세제혜택이 가도록 연금세제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임.
- 반면에 호주는 퇴직연금의 노후소득보장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퇴직연금 가입의무화와 더불어 과감한 연금세제 혜택을 부여하여 퇴직연금제도가 대표적인 노후소득보장제도로 자리매김하고 있음.
 - 호주는 퇴직연금 가입률이 95%에 이르는 등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으로 퇴직연금제도를 정착시킨 국가라는 점에서 호주의 연금세제 개혁 사례 등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음.
 - 2007년도에 이어 2012년에 연금세제개혁을 추진하여 퇴직연금시장의 성장에 기여해 오고 있음.
- 이에 본고에서는 호주 퇴직연금시장의 성장배경이 된 연금세제의 개혁 내용 및 특징 등을 살펴보고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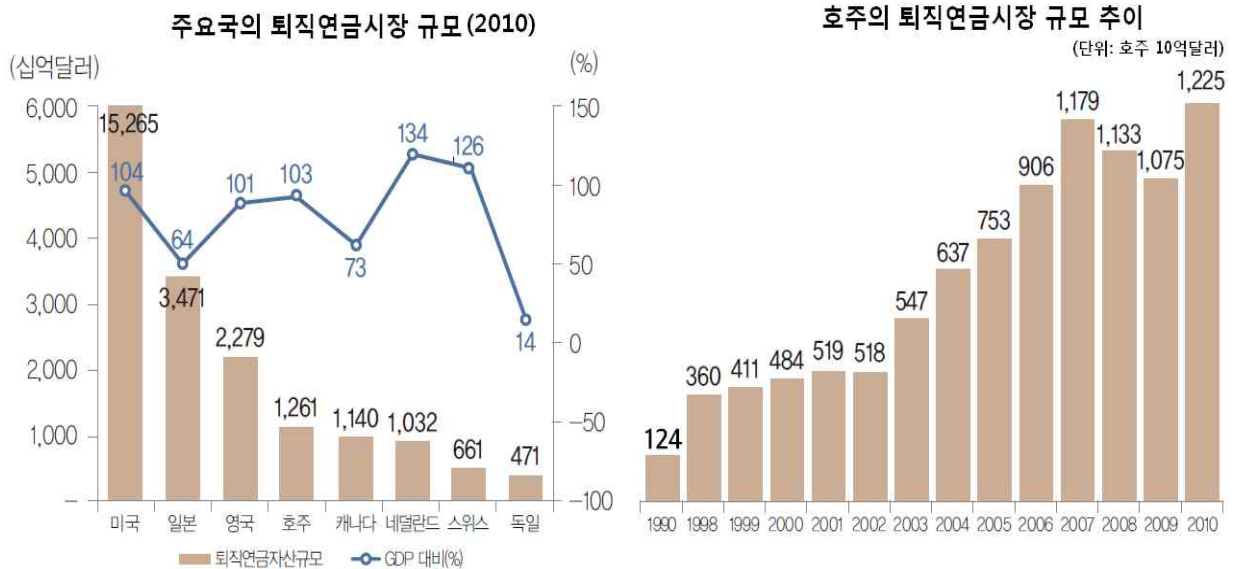
2. 호주의 퇴직연금 현황과 성장배경



가. 현황

- 호주의 경우 1986년 도입된 생산성보상연금제도(Productivity award Superannuation)에 의해 퇴직연금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작됨.
 - 호주는 1980년대 정부와 노조의 다양한 노력과 협의를 거쳐 1986년 호주 중재위원회가 임금인상 분 중 3%까지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연금에 납입을 허용하면서 제한된 직종에 한하여 임의제도로서 도입됨.
 - 1988년부터는 일정액 이상의 퇴직연금 급여를 일시금으로 받을 경우 초과금액에 대해 최고세율로 과세하여 한꺼번에 많은 금액을 인출하지 못하게 하는 적정급여한도제(Reasonable benefit limit)를 2007년까지 시행함.
- 호주는 연금가입을 의무화하여 사용자 기여금의 납부를 보증하는 보증부 퇴직연금(Superannuation Guarantee)인 강제가입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1992년에 도입함.
 - 도입 배경은 종전에 생산성보상연금제도가 시행되어 퇴직연금 기틀이 마련되고 퇴직연금 규모가 급속하게 확대되었지만 여전히 사용자의 낮은 기여율 등이 제도 활성화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했기 때문임.
 - 이에 1991년 보증부 퇴직연금법률(Superannuation Guaranty Legislation)을 제정함.
 - 노사협상에 의한 임의가입제도였던 퇴직연금이 가입 의무화되어 연금시장이 성장하기에 이룸.
- 보증부 퇴직연금 도입 20년 만에 퇴직연금시장 규모가 약 1.3조 호주달러로 성장하여 퇴직연금이 호주의 대표적인 노후소득보장제도로 자리매김하고 있음.
 - GDP대비 퇴직연금자산의 비중은 103%에 이르고 근로자의 퇴직연금 가입률은 2010년 기준으로 95% 수준에 이룸.
 - 호주의 퇴직연금자산은 보증부 퇴직연금 도입 이후 연평균 12%씩 급성장하는 추세임.
 - 퇴직연금시장이 성장하면서 호주의 자산운용시장은 세계 4위로 도약하고 모든 정규직 근로자가 퇴직 연금에 가입할 만큼 노후소득보장제도로써 퇴직연금의 기능과 역할이 매우 큼.

〈그림 1〉 호주의 퇴직연금 시장 현황



나. 성장배경

- 호주 퇴직연금의 급속한 성장은 퇴직연금의 강제가입 시행과 더불어 파격적인 연금세제 혜택 부여로 가능하게 됨.
 - 퇴직연금중심으로의 노후소득보장체계 전환과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한 연금세제 개혁으로 인해 근로자의 퇴직연금 가입이 급속히 증가함.
 - 퇴직연금 강제화를 통해 제도를 획기적으로 성장시킨 후에도 지속적인 연금세제 정비를 통해 제도의 활용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시켜 퇴직연금의 성장과 발전을 유도함.
- 퇴직연금에 부여하는 세제혜택은 당장의 세수감소 문제가 아니라 정부의 고령화리스크를 감소시키고 근로자의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는데 필요한 미래지향적 투자라는 인식하에 세제개혁이 이루어짐.
 - 특히 고령자 및 저소득계층 중심의 세제개혁은 퇴직연금이 보편화되고 퇴직연금시장이 발전하는데 크게 기여함.
 - 이는 세제개혁 후 퇴직연금시장이 급격히 성장하고 가입률의 증가가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도 알 수 있음.
 - 퇴직연금시장의 규모가 현 위치까지 이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호주의 독특한 세제라 할 수 있음.

3. 퇴직연금 세제개혁 내용 및 특징



가. 내용

- 호주는 기여단계, 운용단계, 급여 단계 등 3단계 모두 과세가 이루어지는 TTT(Tax · Tax · Tax)방식의 세제체계를 지향하고 있음.
- 따라서 기여 및 운용단계는 비과세하고 급여단계만 과세하는 우리나라의 퇴직연금 세제체계나 미국 401(k) 플랜의 세제체계와 매우 상이함.
- 또한 기여단계는 비과세, 운용단계는 적립금에 대한 특별법인세가 부과(현재는 동결 중)되는 일본의 퇴직연금 세제체계와도 다름.

〈표 1〉 연금세제개혁 이전과 이후의 세제체계

구분	개혁 이전	개혁 이후
기여금 관련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령대별로 최저세율(15%)을 적용받을 수 있는 있는 한도액 설정 •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31.5% 세율로 과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자는 기여금에 대해 연간 50,000호주달러까지 최저세율(초과 시 31.5% 세율부과)을 적용받고, 기업은 납부금액 전액 손비인정 • 2007년 7월 1일부터 2012년 6월 30일까지는 50세 이상 가입자에 한해 기여금의 최저세율 적용한도를 연간 100,000호주달러까지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2년 7월 이후 50,000 호주달러로 축소
운용 관련세제	원칙적으로 15% 과세	원칙적으로 15% 과세
연금수령 관련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83년 7월 이전근무에 대한 급여가 지급될 경우 5% 세율 적용 • 1983년 7월 이후 근무에 대한 급여는 연령별 기준대로 세율부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5세 미만: 20% 세율적용 - 55세 이상: 129,751호주달러까지 비과세, 초과분에 대해서는 15% 세율로 과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83년 7월 이전근무에 대한 급여는 비과세 • 1983년 7월 이후 근무에 대한 급여는 수령대상자의 나이가 60세를 넘었을 경우 전액비과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0세 미만의 경우 과거와 동일

■ 이와 같은 세제체계의 호주는 1992년에 도입된 보증퇴직연금의 활성화를 위해 2007년 및 2012년 두 차례의 연금세제 개혁을 통해 과감한 연금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 연금세제 개혁은 퇴직연금가입을 적극 유도하여 고령화에 따른 근로자의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
되, 저소득계층·고령층 근로자들에 더 많은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짐.
 - 2007년 연금세제 개혁은 일시금에 대한 세제혜택을 과감히 축소하면서 연금에 대한 세제혜택
은 대폭 확대하여 퇴직연금으로의 전환을 적극 유도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짐.
 - 반면에 2012년 연금세제 개혁은 저소득계층 등 취약계층에 더 많은 연금세제 혜택이 제공되도
록 연금세제 차별화를 기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짐.

나. 특징

■ 퇴직연금 기여금에 대한 세제혜택 확대

- 2007년 세제개혁 이전에는 세제혜택(15% 최저세율 과세)을 받을 수 있는 퇴직연금 기여한도가 연
령별로 차등 적용되었으나 근로자들의 퇴직연금 활용의욕을 저하시키고 35세 젊은 층에 대한 인센
티브가 지나치게 부족하다는 점이 문제 시 되면서 세제혜택 한도를 확대함.
 - 호주 퇴직연금제도에서는 퇴직연금 기여금에 대해 15%의 최저세율 혜택이 주어짐.
 - 즉 퇴직연금 기여금(사용자 기여금 포함)은 일단 개인의 과세대상소득에서 제외하는 한편, 퇴
직연금기금(superannuation fund)이 기여금에 부과하는 세금(15%)을 가입자 대신 일괄 납부
하므로 개인은 퇴직연금 기여단계에서 15%의 세금을 부과하게 됨.

〈표 2〉 연금세제개혁 전후 기여금 과세

2007년 개혁 이전		2007년 개혁 이후	
기준	세제 혜택 한도	기준	세제혜택한도
34세 이하	14,603 호주달러	50세 미만	50,000 호주달러
35~49세 이하	40,560 호주달러		
50~69세 이하	100,587 호주달러	50세 이상	100,000 호주달러

- 연령에 관계없이 연 50,000 호주달러로 세제혜택을 통일하는 대신, 50세 이상에 대해서는 상대적
으로 높은 100,000 호주달러로 유지함.¹⁾

- 세제개혁 이전에는 34세 이하 14,603 호주달러, 35~49세 이하 40,560 호주달러, 50~69세 이하 100,587 호주달러 등으로 연령별로 세제혜택 한도액 차이가 존재함.
- 50세 이상에 대해서는 100,000 호주달러로 세제혜택 한도를 설정함으로써 상대적으로 고연령 근로자에 대한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함.

■ 퇴직연금 급여자에 대한 세제인센티브 강화

- 2007년 7월부터 60세 이후 퇴직연금 급여에 대해 연금과 일시금 등 수급유형을 불문하고 비과세 하여 퇴직연금을 활용한 노후소득마련에 확실한 인센티브가 부여되도록 함.
 - 이전에는 연령대별로 급여한도액이 있어 급여가 이 수준을 초과할 경우 단계별로 차등화된 세율을 적용함.
 - 그러나 2007년 7월부터 60세가 넘으면 보증 퇴직연금 수령액에 대해 전액 비과세함으로써 복잡한 세제를 단순화함.

〈표 3〉 연금세제개혁 전후 연금수령 과세

구분	2007년 개혁 이전	2007년 개혁 이후
연금 수령과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5세 미만: 20% 세율적용 • 55세 이상: 129,751호주달러까지 비과세, 초과분에 대해서는 15% 세율로 과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0세 미만: 연령별 차등 과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5세 미만(20%과세), 55세~60세 미만 (비과세한도초과분 저율과세) • 60세 이상: 전액 비과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급유형 불문(일시금, 연금)

- 이에 따라 65~74세 노인들은 이전보다 평균 5%정도 더 많은 급여를 수령할 것으로 예상돼 고령자의 노후소득보장기능이 한층 강화되는 결과를 초래함.

■ 저소득계층에 대한 퇴직연금 대응 기여

- 호주정부는 2012년 7월부터 저소득계층에 대해 연금세제 지원을 강화하여 저소득계층 중심으로 연금세제를 개편함.

1) 2012년 7월 이후 퇴직연금 세제혜택 적용한도가 절반 수준으로 축소된 바 있지만, 최근 호주정부는 연금세제조정을 통해 고령자 및 퇴직연금적립수준이 일정한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자에게 2007년 연금세제개혁수준으로 세제혜택을 상향조정할 예정임.

- 2012년 7월부터 과세표준(adjusted taxable income)이 37,000 호주달러²⁾ 이하인 국민에게 퇴직연금 불입금의 15%를 퇴직연금계정에 추가 납입을 허용함.
 - 즉 2012년 7월 이후의 연간 퇴직연금불입금을 기준으로 정부 기여금을 계산하여 2013년 7월부터 정부가 추가기여를 할 예정임.
- 퇴직연금 기여금에 대해 15%의 최저세율로 과세하므로 소득이 낮은 사람의 세제혜택이 사실상 매우 적거나 없는 거나 마찬가지였으나 이번 조치로 한계세율이 15%인 소득자에 대해 퇴직연금 불입금에 대한 세금을 환급하는 것이 되어 이들의 퇴직연금 활용 인센티브가 강화됨.

〈표 4〉 현행 호주의 소득세율

연간소득(호주달러)	소득세율
0~6,000	0%
6,000~37,000	15%
37,000~80,000	30%
80,000~180,000	40%
180,000	48%

- 호주정부는 이 조치가 시행되면 350만 저소득층의 퇴직연금 적립금이 8억 3천만 호주달러 가량 추가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함.

4. 시사점



- 호주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연금세제가 퇴직연금의 성장과 발전에 절대적인 영향을 준다는 점을 고려해 퇴직연금으로의 전환을 적극 유도하기 위한 연금세제의 개선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퇴직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향의 연금세제 개선 검토가 필요함.

2) 호주 통계청이 발표하는 평균주당근로수당은 2011년 2분기 기준으로 1,304.70 호주달러이며, 이를 기초로 계산하면 호주 정규 근로자의 평균급여는 약 62,000 호주달러 수준임.

- 먼저 연금세제의 혜택을 단순한 세수감소 문제로 한정하지 않고 퇴직연금 활성화에 따른 정부의 고령화 리스크(재정부담) 경감이라는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함.
 - 퇴직연금의 활성화로 노후소득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정부의 재정부담 가중을 해소하는 고령화비용 관점에서 연금세제 개선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둘째, 일시금에 대한 세제혜택은 축소하되, 연금에 대한 세제혜택을 과감히 부여하여 연금으로의 전환을 적극 유도할 필요가 있음.
 - 이런 점에서 연금 수령 시에는 최저세율 15%, 일시금 수령 시에는 최고세율 48%를 부과하여 연금 전환을 유도하는 호주의 사례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큼.

- 셋째, 저소득계층의 근로자 등이 퇴직연금에 가입하여 퇴직연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호주식의 퇴직연금 매칭기여(Matching Contribution)를 전향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 소득이 낮은 사람의 경우 세제혜택이 없거나 매우 적은 것을 감안하여 정부의 추가기여(정부기여금)를 통해 이들의 퇴직연금 가입을 유도하는 방안의 검토가 요구됨.

- 마지막으로 연령별, 소득별에 따른 연금세제 차별화를 통해 취약계층에 보다 연금세제 혜택이 보다 가도록 연금세제의 개편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kiri](#)